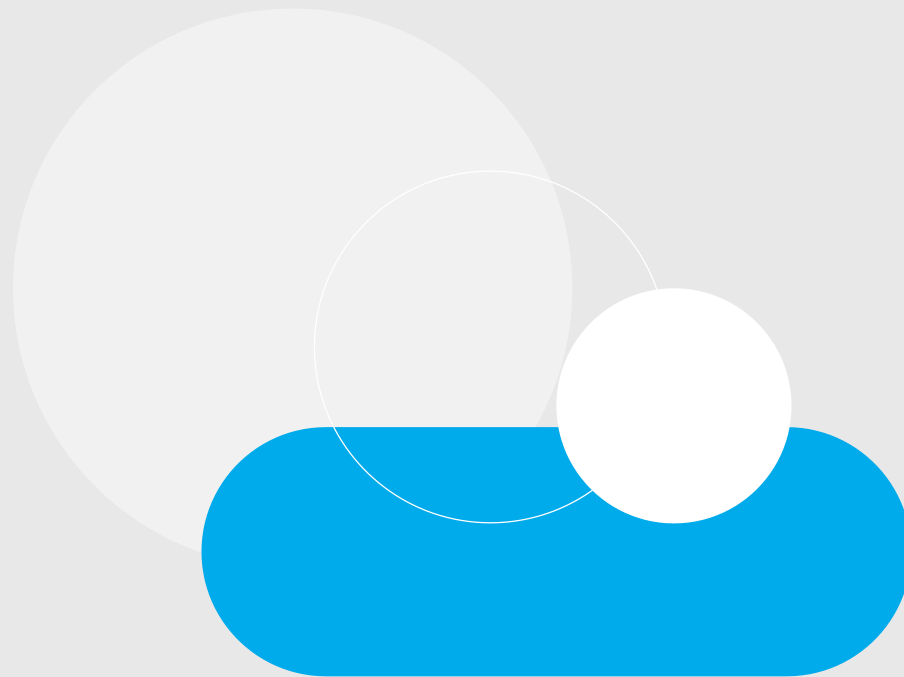


KcLepTM 수험용(교육용) 2025년도 변경사항 안내

NewZen 뉴젠솔루션

작성일자 : 2025.08.22

01 부가가치



01.부가가치

1. 부가가치세신고서 : 시행규칙 개정 반영

변경화면

수시부과세액 라인 추가 및 구분 번호 변경

부가가치세 신고서

1600 뉴렌슬루선

법인 16기

2025-01-01~2025-12-31

부가세 2025

인사 2025

달기

도움

코드

삭제

인쇄

조회

최근 정보

CF2 부가세 작성관리 F3 마감 SF3부속서류전집 CF3 직전년도 매출액확인 F4 과표명세서 F6 환급 F7 저장 F8 사업장명세서 F11 원시데이터커기 CF1 작성방법커기

일반과세

조회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월 31일

신고구분

1. 정기신고

신고차수

부가율

예정

구분		금액	세율	세액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세금계산서발급분	1	10/100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2	10/100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3	10/100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4		
	영세금계산서발급분	5	0/100	
	세 기타	6	0/100	
	예정신고누락분	7		
	대손세액가감	8		
	합계	9	㉔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일반매입	10	
수취분 수출기업수입분납부유예		11		
고정자산매입		12		
예정신고누락분		1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5		
합계(10)-(11)-(12)-(13)-(14)-(15)		16		
공제받지못함매입세액		17		
차감계(16-17)		18	㉕	
납부(환급)세액(매출세액㉔-매입세액㉕)			㉖	
경감	19			
공제세액	20			
합계	21	㉗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22	㉘		
예정신고미환급세액	23	㉙		
예정고지세액	24	㉚		
수시부과세액	25	㉛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6	㉜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7	㉝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8	㉞		
가산세액계	29	㉟		
차감감하여 납부할세액(환급받을세액)㉔-㉕-㉖-㉗-㉘-㉙-㉚-㉛+㉜	30			
출발납부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구분	금액	세율	세액
16. 공제받지못함매입세액			
공제받지못함 매입세액	53		
공통매입세액면세등사업분	54		
대손처분받은세액	55		
합계	56		
18.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 세액공제	57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58		
택시운송사업자경감세액	59		
대리납부세액공제	60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61		
기타	62		
합계	63		

Tip

01.부가가치

2. 부가가치세신고서(간이과세자) : 시행규칙 개정 반영

변경하면

수시부과세액 라인 추가 및 구분 번호 변경

부가가치세신고서(간이과세자)

1600 뉴젠헤스션 | 법인 16기 | 2025-01-01~2025-12-31 | 부가세 2025 | 인사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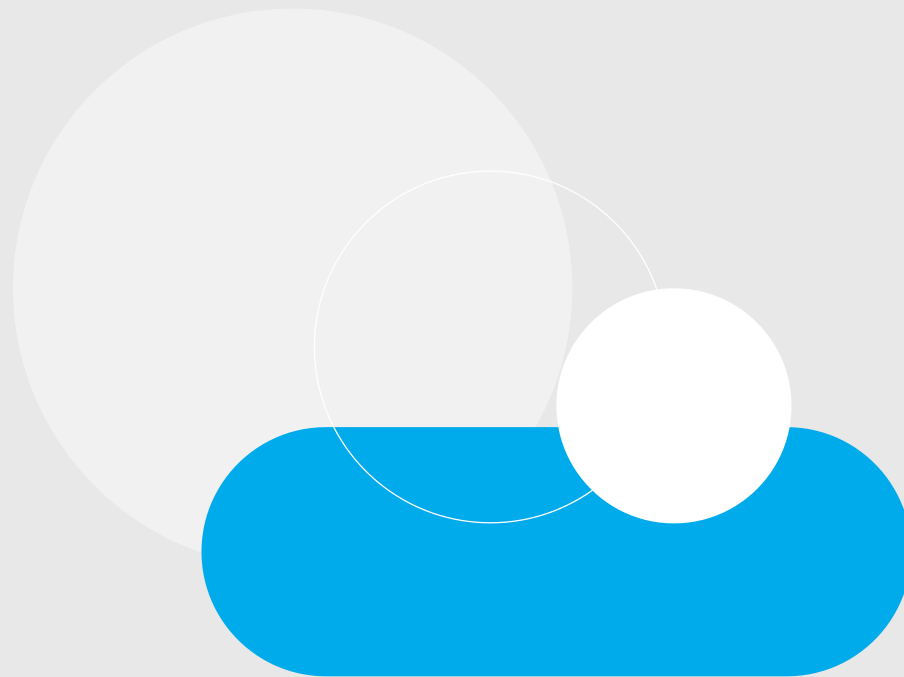
CF2 부가세작성관리 F3 마감 SF3 부속서류전집 F4 과표명세 CF4 영세율상호주의 F7 저장 F8 사업장명세 F11 원시데이터커기 (F11 작성방법커기)

조회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월 1일 신고구분 1.정기신고 신고차수

구분		정기신고금액		
		금액	부가가치율	세율
과세표준	21.6.30. 이전 과세분	1	5/100	10/100
	21.7. 1. 이후 과세분	2	10/100	10/100
	영세율 적용분	3	20/100	10/100
	세액	4	30/100	10/100
	합계	5	15/100	10/100
	매입세액	6	20/100	10/100
	세액공제	7	25/100	10/100
	합계	8	30/100	10/100
	합계	9	40/100	10/100
	합계	10		0/100
	합계	11		0/100
	합계	12		
	합계	13		
공제	매입세액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14		
	의제매입세액공제	15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16		
	전자신고 및 전자과지 세액공제	1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18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19		
	합계	20		
	합계	21		
	합계	22		
	합계	23		
	합계	24		
	합계	25		
	합계	26		
합계	27			
합계	28			
합계	29			
합계	30			

Tip 조회 시작일을 입력하세요

02 원천징수



02.원천징수

1. 사업소득자연말정산 : 시행규칙 개정 반영

변경하면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

사업소득자연말정산

1600 뉴젠텔루션 법인 16기 2025-01-01~2025-12-31 부가세 2025 인사 2025

F3 일괄볼러오기 F3재계산 F4 전근무지 F6 소득자료볼러오기 F7 사업종료일 F8 기부금볼러오기 CF1 작업완료 CF2 완료취소

코드	소득자명	구분	완료
00102	보험설계자	사업	X

연말관계	성명	내.외국인	주민번호	나이	기본공제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경로	자녀	출산 입양
본인	보험설계자	내국인	720101-1111112	53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자녀	내국인	090103-3111111	16	○					○	

◆ 인적공제내역

기본공제	배우자 유/무	20세이하	1명	60세이상	명	수급자, 위탁아동	명
추가공제	경로우대	명	장애인	부녀자 여/부		한부모 여/부	
세액공제	자녀	1명	출산, 입양자	명			

◆ 공제금액

공제	구분	공제금액	공제	구분	공제금액	
기본공제	본인	1,500,000	추가공제	한부모		
	배우자			세액공제	자녀 (1명)	250,000
	부양가족 (1명)	1,500,000		출산, 입양 (명)		
추가공제	경로우대 (명)					
	장애인 (명)					
	부녀자					

인입금원 1명
소득금액원
결정세액원
기납부(전근무지)원
기납부(현근무지)원
차감징수세액원

소득구분별총계보기

Tip 주민번호

1명 : 150,000 → 250,000 , 2명 : 350,000 → 550,000,
3명 이상 : 550,000 + 2명 초과하는 1명 당 400,000 합한 금액

02.원천징수

1. 사업소득자연말정산 : 시행규칙 개정 반영

변경하면 (33)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공제한도 금액 변경

사업소득자연말정산 1600 뉴젠헤스 16기 2025-01-01~2025-12-31 분기제 2025 연세 2025

☒ 닫기 ☑ 도움말 코드 삭제 인쇄 조회

☐ F3 일괄불러오기 ☐ F3재계산 ☐ F4 전근무지 ☐ F6 소득자료불러오기 ☐ F7 사업종료일 ☐ F8 기부금불러오기 ☐ F1 작업완료 ☐ F2 완료취소

코드	소득자명	구분	완료
00102	보험설계사	사업	X

구분	지출금액	공제금액	참고	구분	지출금액	공제금액	참고
(80)연금보험료			[제51조의3]	(41)출산입양세액공제			
(81)종합소득공제계		3,000,000					
(82)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2000.12.31 이전				
(83)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10,000,000	6,000,000	공제한도				
(84)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2017년 10%			50%한도				
2017년 100%, 50%, 30%			50%한도 (변제)				
18년 이후 10%			50%한도				
18년 이후 100%, 70%, 30%			50%한도 (변제)				
(85)절대합계지속합			240만원 한도	(43)기부금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			
(86)소득공제들중합 한도 초과액				우리사주			
(87)종합소득과세표준		18,800,000		(43)기부금세액공제 (지정)			
(88)산출세액		1,560,000	계산방법	일반-중고단계외			
(89)혼인세액공제	부			일반-중고단계			
(40)자녀세액공제		1,350,000		(44)표준세액공제		70,000	

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확인

구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45)결정세액	140,000	14,000		154,000
기납부세액				
(46)중(전)근무지				
(47)주(현)근무지	3,000,000	300,000		3,300,000
(48)차감납부할세액	-2,860,000	-286,000		-3,146,000
			영수일자	2026-02-28

인원 1명

수입액 100,000,000 원

소득금액액 27,800,000 원

결정세액 140,000 원

기납부 (전근무지) 원

기납부 (현근무지) 3,000,000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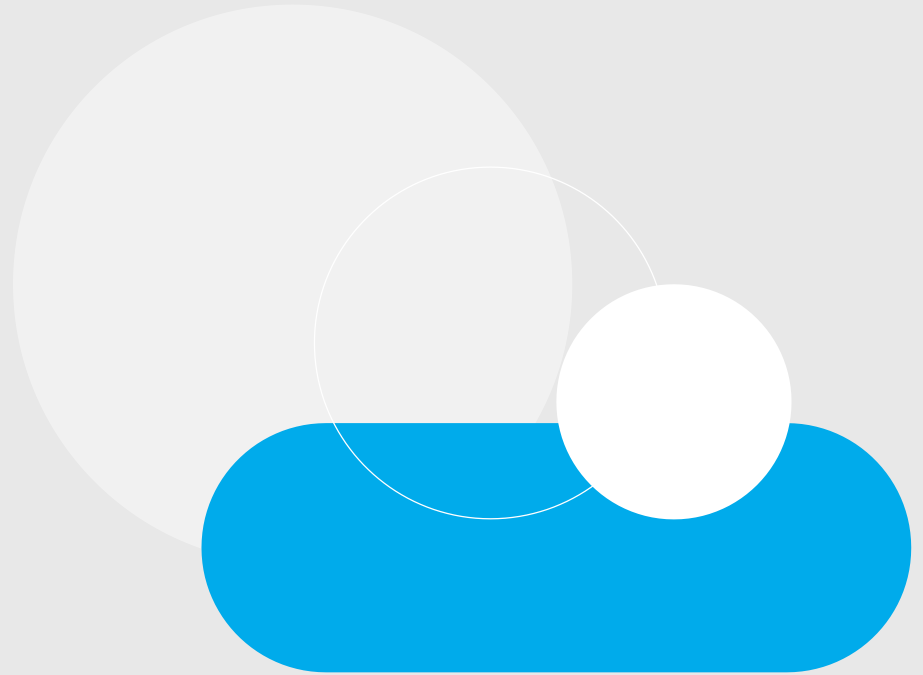
차감징수세액 -2,860,000 원

소득구분별총계보기

Tip

03

법인조정



03.법인조정

2. 농특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 시행규칙 개정 반영

변경화면

세액감면 순서 변경

농특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정기

1600 뉴젠파스

법인 16기 2025-01-01~2025-12-31 부가세 2025 인사 2025

☒ 달가 ☑ 도움말 코드 삭제 인쇄 조회

☰ CF5 전체삭제 F11 저장 F12 불러오기

(8)세액감면	11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8	18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의 해당 금액
	120	제주투자진흥지구등입주기업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9	182	
	121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197	
	122	기업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198	
	123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102	
	124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4호	103	
	125	해양박람회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5호	104	
	126	해양박람회특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6호	105	
	127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7호	107	
	128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8호	106	
	129	평화경제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9호	108	
	130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0호	109	
	1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20제1항	11C	
	132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21제1항	11G	
	133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A	
	134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B	
	135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H	
	136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V	
	13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8	13P	
	138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9	13Q	
	139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13R	
	140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1E1	
	141	해양박람회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5호	1E2	

개정 전자

Tip

개정

전자

Tip

03.법인조정

3. 기부금조정명세서 : 거래처등록 분류등록 통한 기부금 유형 반영 추가 및 텍스트 수정

변경화면

F3조정등록 하단 과목명 미지정 기부금 → 기타 기부금으로 변경

조정 등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합 계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합 계		

소득명세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기타 기부금	5,000,000		

※환경등록-조정등록방법 : 조정과목사용으로 설정됨

손익조정

직접입력

계정코드도움(F2)

조정코드도움(F4)

삭제(F5)

종료(Esc)

※ 1.기부금 입력 탭에 유형 4.그밖의기부금 금액이 있을 경우 조정등록 하단에 표시됨

03.법인조정

4.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시행규칙 개정 반영

변경화면

인쇄서식 개정안 반영

인쇄 설정

인쇄서식

중소기업기준검토표

프린터 선택

Samsung X3220 Series (SEC842519BA389F)

속성

인쇄매수

1

용지방향

세로

가로

인쇄범위

전체

현재 페이지

인쇄할 쪽

1

확대/축소 비율

100

모아적기(용지절약)

모아적기

인쇄방향

가로

세로

인쇄(Alt+I)

결재란 설정

출력 설정

이미지설정

워터마크 설정

환경 설정

인쇄

인쇄 설정

페이지 설정

PDF 저장

백설 저장

사서 저장

사무라이인간증

팩스 보내기

출력물 조정

찾기

1 / 2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51호서식 X(2025.03.21. 개정)]

사업명

2025.01.01 ~ 2025.12.3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인명

뉴젠투루션

사업자등록번호

105-87-51159

구분	① 요건	② 검토 내용	③ 적합 여부 (17)	④ 적정 여부 (28)
① 사업영역	① 부동산업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업태명 구분 기준경비율 코드 사업수입금액 (01) (04) (07) () 업 (02) (05) (08) () 업 (03) (06) (09) 그 밖의 사업 계	적합 (Y)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인 아닐 것		부적합 (N)	
	* ① ②는 2025. 2. 28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② 자산규모	○ 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가. 매출액 - 당 회사 (10)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11) () 억원 이하	적합 (Y)	
	③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나. 자산총액(12) () 억원	부적합 (N)	
③ 매출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	「특별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자산총액 6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3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3조(4)에 따라 상당한 대우를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에	적합 (Y)	적 (Y)
			부적합 (N)	부 (N)

100% <Ctrl+마우스 휠>

03.법인조정

4.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시행규칙 개정 반영

변경화면

요건 및 검토 내용 개정안 반영 (1)

중소기업기준검토표

1600 뉴젠솔루션

법인 16기

2025-01-01~2025-12-31

부가세 2025

인사 2025

닫기

도움

코드

삭제

인쇄

조회

F11 저장

CFS 전체삭제

F12 불러오기

사업 요건 및 규모 요건

독립성 요건 및 유예기간

소기업

중견기업

요건	검토 내용	적합 여부
(101) 사업 요건	업태별/구분	적합
	기준경비율코드	
	사업수입금액	
	그 밖의 사업	
	계	
(102) 규모 요건	가. 매출액	적합
	- 당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기준	
	억원 이하	
	나. 자산총액	
중기업		적정여부
		적합

전자

Tip

03.법인조정

4.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시행규칙 개정 반영

변경화면

요건 및 검토 내용 개정안 반영 (2)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정기
1600 뉴젠솔루션
법인 16기
2025-01-01-2025-12-31
무기세 2025
인사 2025

닫기
도움
코드
삭제
인쇄
조회

F11 저장
CF5 전체삭제
F12 불러오기

사업 요건 및 규모 요건
독립성 요건 및 유예기간
소기업
중견기업

요건	검토 내용	적합 여부
(103) 독립성 요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치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102)의① 기준) 이내일 것	적합
(104) 유예기간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102)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2024년 11월1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부터는 5개 사업연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의4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사유발생 연도(13) 년	

중기업
적정여부
적합

전자

Tip

감사합니다

NewZen 뉴젠솔루션

copyright © all right reserved by newzensolution